

2026. 03. 01.

학 칙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여주대학교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3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1993.03.01	학칙 제정
1	1993.08.27	학칙 개정
2	1994.03.01	학칙 개정
3	1995.03.01	학칙 개정
4	1995.05.01	학칙 개정
5	1995.09.01	학칙 개정
6	1996.03.01	학칙 개정
7	1996.08.14	학칙 개정
8	1997.02.12	학칙 개정
9	1997.03.01	학칙 개정
10	1998.03.01	학칙 개정
11	1999.03.01	학칙 개정
12	2000.03.01	학칙 개정
13	2001.03.01	학칙 개정
14	2002.03.01	학칙 개정
15	2004.02.01	학칙 개정
16	2005.03.01	학칙 개정
17	2006.03.01	학칙 개정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3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8	2006.03.01	학칙 개정
19	2006.11.16	학칙 개정
20	2007.03.01	학칙 개정
21	2007.07.01	학칙 개정
22	2007.09.01	학칙 개정
23	2008.03.01	학칙 개정
24	2008.09.01	학칙 개정
25	2009.03.01	학칙 개정
26	2010.03.01	학칙 개정
27	2011.03.01	설치학과 및 정원조정, 전과제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개정
28	2012.03.01	설치학과 및 정원조정, 교명 및 주소 변경, 직제 개편 등에 관한 개정
29	2012.09.01	학과 폐과 신설, 전과제도(10%→20%) 변경 등에 관한 개정
30	2013.03.01	설치학과 및 정원조정, 직제 개편, 교원책임시수 변경, 전공 심화과정 개설, 학교기업 등에 관한 개정
31	2013.06.01	총칙 및 직제개편, 추가시험 성적(B ⁰ →B ⁺) 교육부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개정
32	2014.02.28	제4조(위치),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9조(수업연한), 제36조(수업),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제90조의 2(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등 개정
33	2014.04.18	제7조(교직원의 임무), 제8조(조직), 제58조(학생자치 기구),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89조(산학협력단의 설립) 등 개정
34	2015. 02. 28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47조의 2(학위수여 취소), 제80조(학교기업 설치), 제85조(학칙공고기간)
35	2015. 04. 15	제22조 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80조(학교기업 설치)개정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3/3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36	2015. 09. 10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2조(학기), 제21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26조(편입학), 제27조(재입학), 제28조(전과), 제30조(휴학), 제32조(자퇴), 제33조(제적), 제34조(교육과정), 제34조의2(현장실습 교육과정), 제34조의3(기타 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수업), 제37조(집중수업), 제38조(교원 수업시간), 제39조(수강신청) 제41조(출석인정), 제43조(추가시험), 제44조(성적), 제46조(학사경고), 제47조(졸업), 제50조(학점인정), 제51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2조(공개강좌), 제53조(전공심화과정), 제54조(시간제 등록제), 제55조(학점은행제), 제56조(비정규 특별과정운영), 제57조(장애학생 학점등록), 제58조(학생자치기구), 제62조(학생지도), 제66조(포상), 제67조(장학금), 제68조(징계), 제69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제70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71조(등록금), 제75조(구성), 제77조(교무위원회), 제78조(대학평의위원회), 제79조(제위원회),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제81조(구성 및 운영), 제82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89조(산학협력단의 설립), 제90조(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 제92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등 신설 및 개정
37	2015. 11. 24	제8조(조직)
38	2016. 2. 1	제12조(학기), 제20조(입학전형), 제25조(산업체위탁교육), 제34조(교육과정), 제36조(수업), 제37조(집중수업), 제22장 대학도서관, 제94조(도서관 운영), 제95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9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97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제98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 제99조(도서관 시설 및 자료)
39	2016. 3. 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9조(수업연한), 제28조(전과),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74조(등록금의 반환), 제94조(도서관 운영), 제95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40	2016. 5. 1	제8조(조직), 제35조(교과이수단위)
41	2016. 9. 1	제2조(교육목표), 제30조(휴학), 제62조(학생지도)
42	2017. 2. 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27조(재입학), 제29조(학과폐과), 제92조(장애학생지원)
43	2017. 3. 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16조(입학시기), 제34조의1(교육품질), (별표1-1,1-2)
44	2017. 7. 1	제37조(집중이수제)
45	2017. 8.25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4/3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46	2018.02.01	제8조(조직)
47	2018.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70조(등록금심의위원회)
48	2018.09.01	제12조(학기), 제30조(휴학),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5(성적의 취소), 제49조(수료), 제55조(학점은행제)
49	2018.12.20	제26조(편입학)
50	2019.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9조(수업연한), 제35조(교과이수단위), 별표1-1 전문학사 학위구분,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51	2019.08.01	제6조(교직원), 제8조(조직),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5조(성적의 취소)
52	2020.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27조(재입학), 제34조(교육과정), 제34조의1(교육품질관리), 제38조(교원 수업시간), 제42조(시험), 제44조(성적),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53	2021.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11조(학년), 제35조(교과이수단위),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54	2021.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24조(입학 취소)
55	2022.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9조의 2(장애학생지원),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70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92조(장애학생지원), 제93조(운영규정), 별표1-1 전문학사 학위구분,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56	2022.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28조(전과), 제31조(복학 및 복적), 제34조(교육과정)
57	2023.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5조의 2(전공심화과정), 제25조의 3(성인학습자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7조(졸업),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58	2023.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28조(전과), 제87조(심의 및 공포)
59	2024.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60	2024.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28조(전과)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5/35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61	2025.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8조(조직), 제25조의 4(계약학과), 제25조의 5(전담학과), 제26조(편입학), 제28조(전과), 제44조(성적), 제45조(성적의 취소), 제49조(수료), 별표1-1 전문학사 학위구분,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62	2025.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연한), 제49조(수료), 제90조의 2(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63	2026.03.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7조(교직원의 의무), 제8조(조직), 제12조(학기), 제14조(휴업일), 제25조(산업체 위탁교육), 제27조(재입학), 제34조(교육과정), 제34조(현장실습 교육과정), 제36조(수업), 제37조(집중이수제), 제38조(교원 수업시간), 제41조(출석인정), 제42조(시험), 제44조(성적), 제46조(학사경고), 제70조(등록금 심의위원회), 제77조(교무위원회), 제79조(제위원회), 별표1-1 전문학사 학위구분, 별표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6/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여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인간다운 사랑”, “아름다운봉사”, “정의로운 실천”의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 도전성 교육, 협동성 교육의 교육목표를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중점 목표로 한다. (개정 2016.9.1.)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여주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38에 둔다. (개정 2014.2.28.)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2015.9.10., 2016.5.1., 2017.2.1., 2017.3.1., 2018.03.01., 2019.03.01., 2020.03.01., 2021.03.01., 2021.9.1., 2022.3.1., 2022.9.1., 2023.3.1., 2023.9.1., 2024.9.1., 2025.3.1., 2025.9.1.)

모집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주간	모집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주간
미래자동차과	2년	70	안경광학과	3년	40
토목방재과	2년	30	작업치료과	3년	48
반도체시스템과	2년	30	건강운동재활과	2년	35
AI 소프트웨어과	2년	30	카페베이커리과	2년	30
해운산업과	2년	30	심리재활치료과	2년	30
항공정비과	3년	48	패션뷰티스타일과	2년	30
특전부사관과	2년	30	자유전공과	2년	40
사회복지상담과	2년	30	전기과	2년	30
준오토헤어스타일과	2년	35	e스포츠과	2년	30
실용음악과	3년	180	웹툰콘텐츠과	2년	30
스포츠 · 경호과	2년	60	지방자치행정과	2년	30
간호학과	4년	106	골프산업과	2년	30
치위생과	3년	84	파크골프지도과	2년	40
물리치료과	3년	40			
합 계			27개 학과		1,24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	수업연한	모집정원	주야구분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과정	
사회복지상담학과	1년	12	야간		
미래자동차공학과	2년	16	야간		
항공정비공학과	1년	22	야간		
실용음악학과	1년	25	주간		
스포츠 · 경호학과	2년	15	야간		
패션뷰티스타일학과	2년	20	야간		
물리치료학과	1년	20	야간		
안경광학과	1년	16	주간		
심리재활치료학과	2년	15	야간		
합 계		9개 학과 161명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7/35

② 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경우,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그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교직원은 총장, 부총장,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② 교원에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과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8.01.)

③ 교직원의 임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취업지도 및 산학협력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교원 중 교원임무에 따라서 전담교원(교육전담, 외국어전담, 산학협력전담, 취업전담)을 둘 수 있다.

⑤ 채용형 및 지정형 산학협력중심교수 또는 교육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4.18.)

⑥ 직원은 학교의 행정업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4.4.18., 2026.3.1.)

제8조(조직) ① 본 대학에 교무처, 산학협력처, 학생처, 입학처, 기획처, 행정처, 국제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4.4.18., 2015.11.24., 2016.3.1., 2016.5.1., 2017.2.1., 2018.02.01. 2019.03.01., 2019.08.01., 2020.03.01., 2025.3.1.)

② 본 대학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

③ 총장은 대학교의 특성화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외부인력을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4.04.18.)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 설치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년으로 한다.

② 항공정비과, 실용음악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그 이외의 학과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16.03.01., 2017.03.01., 2019.03.01., 2021.3.1., 2021.9.1., 2022.9.1., 2023.9.1., 2024.9.1., 2025.9.1.)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5.9.10.)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8/35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 다학기제 및 실습(창업)학기제 등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각 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 2018.09.01., 2026.3.1.)*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동계방학 기간은 학사일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3.01, 2017.3.1.)*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8조(외국인 학생) 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에 따른다.

제19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 공고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의 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이 입학지원 절차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1.)*

제20조(입학전형) 매 학년도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에 따라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한다. *(개정 2016.2.1.)*

제21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 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9/35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22조의 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실기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15.)*

제23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총장이 허가한다.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9.1.)*

제25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하여 총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의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개정 2026.3.1.)*

제25조의 2(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3.01.)*

제25조의 3(성인학습자과정)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시하는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성인학습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3.01.)*

제25조의 4(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3.1.)*

제25조의 5(전담학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 외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

제6장 편입학, 재입학 및 전과

제26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2018.12.20., 2025.3.1.)*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여석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3.1.)*

③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0/35

한다. (개정 2025.3.1.)

제27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8조 제2항(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와 산업체위탁교육생 신분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0., 2020.03.01.)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유사학과(계열)로 입학 할 수 있으며,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 받아 심의 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1.)

④ 기타 세부운영 사항은 재입학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정 2017.2.1.) (개정 2026.3.1.)

제28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동안 1회에 한한다. 다만, 4년제 간호학과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성인학습자 과정으로의 전과만 허용한다. (개정 2024.9.1.)

② 2년제와 3년제로 입학한자는 전과가 가능하며,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양학과(전공)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건계열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해당 인원만큼을 허용한다. (개정 2015.9.10., 2016.3.1., 2022.9.1., 2023.9.1., 2025.3.1.)

③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1.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자
2. 산업체 위탁 교육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4. 정원 내 재입학자 및 징계 사실이 있는 자

⑤ 기타 세부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29조(학과 폐과) ① 본 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내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과를 폐과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1.)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0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휴학원)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2018.09.01.)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 및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1/35

제31조(복학 및 복적)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1/4 이내 수업결손(요일별 1/4 이상)이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9.1.)

제32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자퇴원)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0.)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3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4 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1/4 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10.)
5.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자
6. 대학의 징계로 제적 통보 받은 자 (신설 2023.03.01.)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9.10.)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15%, 전공교과 85~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학과별 특성화에 따른 코스제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과 모집과정별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교양과목은 융합교양, Y-TECH 인재교양, 전공기초교양, 직업기초교양 과목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9.10., 2016.2.1., 2016.3.1., 2017.8.25., 2022.9.1.)

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혁신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혁신교육과정은 역량과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포함한다. (신설 2016.3.1., 개정 2020.03.01.)

⑥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2026.3.1.)

제34조의1(교육품질관리) 혁신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및 학과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2/35

를 실시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20.03.01.)

제34조의2(현장실습 교육과정) ①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은 공학계열 학과, 임상실습·보육실습·사회복지실습·기타 실습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②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2026.3.1.)

제34조의3(기타 교육과정) 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매대학 연구 및 공동 교육과정
2. 해외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과정
3.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5. 주문식 교육과정
6. 기타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인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35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는 74학점, 3년제는 112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교과는 10학점 이상, 전공교과는 2년제 60학점, 3년제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8.09.01.)

③ 4년제 간호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교과는 25학점 이상, 전공교과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기초과목 중 임상실습교과목 22학점과 인문사회과학과목 8학점 포함 10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입생 및 편입생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선 이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선 이수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9.01., 2019.03.01., 2022.03.01.)

④ 사회봉사과목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여 Pass하거나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⑤ (개정 2015.09.10.)(삭제 2019.03.01.)

⑥ 교과이수단위는 매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년제 학과의 7, 8학기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에 의한다. (개정 2015.09.10., 2016.03.01., 2016.05.01., 2018.09.01., 2019.08.01., 2021.03.01.)

⑦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021학번 입학자부터는 1년 과정 20학점 이상, 2년 과정 5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2020학번 이전 입학자의 경우 1년 과정 20학점 이상, 2년 과정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0., 2018.09.01., 2021.03.01., 2023.03.01.)

⑧ 산업체 위탁생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2023학번 입학자부터 2년제 학과 64학점, 3년제 학과 112학점으로 하되, 교양 교과는 10학점 이상, 전공교과는 2년제 50학점, 3년제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3/35

9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01.)

⑨ 성인학습자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68학점으로 하되, 교양 교과는 10학점 이상, 전공 교과는 5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

제36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방송, 통신, Internet 등)수업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5.9.10., 2016.2.1., 2026.3.1.)

②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하고 수업시간은 학사운영업무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8., 2015.9.10., 2026.3.1.)

제37조(집중이수제)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및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편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삭제 2016.2.1.), (신설 2017.7.1.) (개정 2026.3.1.)

제38조(교원 수업시간) ① 교원의 과목별 수업기간은 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② 전임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과 기타 교원의 책임 수업시간 및 초과 수업시간은 교원복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01., 2026.3.1.)

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2026.3.1.)

제40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 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1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 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2026.3.1.)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신설 2016.3.1.) (개정 2020.03.01.) (삭제 2026.3.1.)

제43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4/35

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44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성 적	평 점	비 고
A ⁺	100 - 95	4.5	
A ^o	94 - 90	4.0	
B ⁺	89 - 85	3.5	
B ^o	84 - 80	3.0	
C ⁺	79 - 75	2.5	
C ^o	74 - 70	2.0	
D ⁺	69 - 65	1.5	
D ^o	64 - 60	1.0	
F	59 이하	0	
P	불 계		

② 교과목 성적이 D^o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아동보육복지과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및 해외연수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과의 교과목 중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P” 를 급제로 한다. (개정 2020.03.01.)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5.3.1.)

⑥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5.3.1.)

⑦ (신설 2016.3.1.)(개정 2020.03.01)(삭제 2026.3.1.)

⑧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0., 2026.3.1.)

제4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 학기 수강제한 학점(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단, 편입생의 경우는 24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9.09.01.)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삭제 2025.3.1.)

5. (삭제 2025.3.1.)

제46조(학사경고) 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2026.3.1.)

제47조(졸업) ①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35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1,1-2]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1,1-2,1-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09.10.)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1-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5/35

③ 산업체 위탁생으로 제35조 8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03.01.)

제47조의 2(학위수여취소) ①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03.01.)

제48조(후기졸업) 졸업 기준학점에 미달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49조(수료) ① 학년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

1. 1학년수료 : 37학점이상(개정 2018.09.01.)
2. 2학년수료 : 74학점이상(개정 2018.09.01.)
3. 3학년수료 : 112학점이상(개정 2018.09.01.)

② 4년제 간호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수료 : 33학점 이상(개정 2018.09.01.)
2. 2학년수료 : 66학점 이상(개정 2018.09.01.)
3. 3학년수료 : 99학점 이상(개정 2018.09.01.)
4. 4학년수료 : 130학점 이상(개정 2018.09.01.)

③ 산업체 위탁생 학생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3.1.)

구분	학년	2년제	3년제
산업체 위탁생	1학년	32	37
	2학년	64	74
	3학년	-	112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3.1.)

구분	학년	학점
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4학년 수료	20
	2년과정 3학년 수료	32
	2년과정 4학년 수료	54

⑤ 성인학습자 과정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9.1.)

1. 1학년수료 : 34학점이상
2. 2학년수료 : 68학점이상

제50조(학점인정)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10.)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6/35

제10장 평생교육

제51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5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53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54조(시간제 등록제)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55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따라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사 및 전문학사 학점은행제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74학점(3년제 1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47학점(3년제 74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별지 1-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9.10., 2018.09.01.)

③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56조(비정규 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10.)

제57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③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7/35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은 학생 자치역량 향상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 학생회, 대의원회, 언론기구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0.)*

제59조(학생회 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다.

제62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지도교수에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③ 외국학생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④ 학생 집단 활동 시에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연대 책임을 진다. 그 외 관련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9.01.)*

제6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요청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제64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67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8/35

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 및 운영·심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6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③ 모든 징계 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9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13장 등록금

제7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재학생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03.01.)

④ 위원회는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1.)

1. 교직원 : 4명
2. 학생 : 4명
3. 관련 전문가 : 2명
4. 학부모 또는 동문 : 1명 (개정 2018.03.01.)

⑤ 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10., 2026.3.1.)

제71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등록금은 분할납부, 카드납부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9.10.)

제72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19/35

니한다.

제73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 혹은 유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4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제14장 교수회 및 기타 위원회

제75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보직교수 회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9.10.)

제76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7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2026.3.1.)

제78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9.10.)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10., 2026.3.1.)

제15장 학 교 기 업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립한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0/35

② 학교기업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38에 설치한다. (개정 2014.02.28.)

③ 학교기업의 연계학과 및 사업종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 2015.04.15., 2015.09.10.)

④ 학과의 운영과 수업에 연관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04.15.)

제81조(구성 및 운영) 학교기업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10.)

제82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학점의 1/4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당 인정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10.)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은 한 학기당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3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에 대한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학생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기준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제8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공포한다. (개정 2023.9.1.)

제17장 부속 및 부설기관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1/35

제88조(부속기관) 본 대학의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폐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의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18장 산학협력단

제89조(산학협력단의 설립)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하며, 산업체 등에 기술을 이전하고 자문 등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5.09.10.)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하 센터나 복수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14.04.18.)

제90조(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10.)

제90조의 2(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삭제 2025.9.1.)

제19장 자체평가

제91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10.)

제20장 기 타

제92조(장애학생지원) ① 본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업수행, 학교생활 적응, 편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접근을 위하여 자막, 해설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2.01., 2022.3.1)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7.02.01.)

③ 본 대학은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7.02.01.)

④ 장애학생지원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지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2.01.)

제21장 보 칙

제93조(운영규정) (삭제 2022.03.01.)

제22장 대학도서관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2/35

제94조(도서관 운영)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여암학술정보관 운영에 있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설 2016.02.01.)

1. 여암학술정보관은 1인당 장서구입비, 각종 평가 지표, 이용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여암학술정보관 조직은 직제에 따른다.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암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여암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여암학술정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암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5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6.02.01.)

②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 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 2016.02.01.)

①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암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여암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암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7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11조, 동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한다. (신설 2016.02.01.)

제98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11조 3항, 동시행령 11조 2항에 따라 사서 및 전문직원 1인당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신설 2016.02.01.)

제99조(도서관 시설 및 자료)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시설 및 자료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0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3/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25조에 의한 산업체위탁 교육생 중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때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에는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4/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14조 교명 변경) 제 ①항에 따른 경과조치/법 개정 공포: 2009년 1월 30일) 「학장」에서 「총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18조 학교의 명칭) 제②항에 따른 경과조치/법 개정 공포: 2011년 11월 20일) 「여주대학」에서 「여주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변경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골프경영과, 음악공연예술과, 도자문화예술과, 주얼리디자인과는 2013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 2항에 의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원 타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관광영어과, 경호보안과, 시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5/35

과는 2014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 2항에 의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원 타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 제2장 제8조(조직)에 대한 조직개편은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변경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통폐합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통폐합 전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2015. 3월 1일부터 제33조②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비즈니스영어과는 2016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은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 2항에 의거 본인에 희망에 따라 전원 타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변경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6/35

제3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통폐합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통폐합 전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1학년도부터 방송영상제작과는 방송제작/연예과(연예연기전공, 영상제작전공)으로, 2012학년도부터 광고홍보디자인과는 광고홍보과로, 국방장비과는 국방장비과(궤도장비전공, 국방의료전공)으로, 2013학년도부터 국방장비과(궤도장비전공, 국방의료전공)은 국방장비전공과 국방의무전공으로, 경찰경호과는 경호보안과로, 2014학년도부터 국방의무전공은 국방의료전공으로, 인터넷정보처리과는 인터넷정보과로, 관광경영과는 호텔관광과로, 패션코디네이션과는 패션디자인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행정과로, 뷰티디자인과(뷰티스타일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는 뷰티디자인과로, 2015학년도부터 국방의료전공은 국방의료과로, 국방장비전공은 국방장비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조경과로, 항공정비전공은 항공정비과로, 관광일본어과는 글로벌여행과로, 비즈니스경영과는 유통서비스경영과로, 영상제작전공은 방송미디어제작과로, 연예연기전공은 연예유지컬연기과로, 푸드코디네이션과는 호텔외식산업과로, 뷰티디자인과는 피부미용과로, 2016학년도부터 글로벌여행과는 관광일본어과로, 2017학년도부터 세무회계정보과는 금융회계경영과로,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조리과로 학과 명칭변경이 변경되어 명칭변경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3년제로 변경된 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부터 실용음악과는 2년제에서 3년제로, 2014학년도부터 사회복지과는 2년제에서 3년제로, 2016학년도부터 방송미디어제작과 2년제는 방송미디어과 3년제로, 패션디자인과 2년제는 패션디자인과 3년제로 모집하고 학제변경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 년 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복학의 경우 학생은 2년제 또는 3년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단, 재입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1학년도부터 도자문화예술과 인테리어세라믹디자인전공 및 생활도예전공은 도자문화예술과(인테리어세라믹디자인전공, 생활도예전공)으로, 음악공연예술과 클래식전공 및 뮤지컬전공은 음악공연예술과(클래식전공, 뮤지컬전공)으로, 뷰티디자인과 뷰티스타일디자인전공 및 피부관리전공은 뷰티디자인과(뷰티스타일디자인전공, 피부관리전공)으로, 2015학년도부터 사회체육과는 스포츠건강관리과로, 2016학년도부터 사진영상과는 방송미디어과(3년제)로 2017학년도부터 헤어디자인전공 및 피부미용전공은 뷰티미용과로 통합되며, 학과 통합 전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통합 전 학과에 재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17학년도 이후 복학생 및 재입학생에 대해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7/35

서는 본 대학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과 및 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부터 방송영상/연예과(연예연기전공, 영상제작전공)은 영상제작전공, 연예연기전공으로, 2016학년도부터 피부미용과는 헤어디자인전공, 피부미용전공으로 분리되어 분리전 학과의 학생이 복학할 경우 학생이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제6조(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과, 토목과, 도시조경과, 인터넷정보과, 국방통신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게임기획비즈니스과, 광고홍보과, 국방의료과, 정보통신과, 국방기술행정과, 보안안전경영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연예뮤지컬연기과, 헤어디자인전공, 피부미용전공, 방송미디어과, 패션디자인과는 2017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은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 2항에 의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원 타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교육과정)제4항 및 제35조(교과이수단위)제2항 개정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통폐합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경과조치) ① 폐과에 따른 학과의 경과조치로 학과의 모집중단 년도부터 해당 전공을 졸업할 수 있도록 존치년도를 적용하여 최종모집 중단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의 존치년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재(복)학생의 경우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거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칙 개정 전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재(복)학생의 경우 학칙 개정 전 학과의 제적생 및 규정학기초과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유통서비스과, 금융회계경영과, 패션산업과(3년제), 뷰티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8/35

미용과는 2018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은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2항에 의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원 타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호텔외식조리과는 호텔조리베이커리과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12조(학기), 제30조(휴학)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5조(성적의 취소), 제49조(수료), 제55조(학점은행제)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6조(편입학) 간호학과의 편입학은 2019학년도부터 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은 2019학년도 편입생부터, 제35조제4항은 2019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부터 전자과는 지능로봇과로, 도시공간디자인과는 건축·토목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상담학과로, 보육과는 아동보육복지과로, 뷰티헤어스타일과는 준오헤어스타일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단 컴퓨터정보과는 컴퓨터정보과로 소프트웨어융합과는 소프트웨어융합과로 복학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컴퓨터정보과(2년제)에서 소프트웨어융합과(3년제)로 전과할 수 있다.

제4조(학과 통폐합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경과조치) ① 폐과에 따른 학과의 경과조치로 학과의 모집중단 년도부터 해당 전공을 졸업할 수 있도록 존치년도를 적용하여 최종모집 중단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의 존치년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재(복)학생의 경우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거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칙 개정 전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재(복)학생의 경우 학칙 개정 전 학과의 제적생 및 규정학기초과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학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29/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5조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부터 특수전과는 특전부사관과로, 건강재활과는 건강운동재활과로, 뷰티약손미용과는 의료약손미용과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능로봇과, 건축·토목과(3년제), 항공정비과(2년제)는 2021학년도 학생모집을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항공정비과(2년제)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항공정비과(2년제) 과정으로 복학하였다가 항공정비과(3년제) 과정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4조(재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과(3년제) 재설치로 종전의 건축과(3년제)학생은 건축과(3년제)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부터 자동차과는 미래자동차과로, 항공전자통신과는 항공통신부사관과로, 무인항공드론과는 무인드론부사관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기과, 소프트웨어융합과(3년제), 건축과(3년제), 항공서비스과는 2022학년도 학생모집을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4조 제4항은 2022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부터 국방장비과는 국방장비부사관과로, 아동보육복지과는 아동교육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30/35

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의료약손미용과, 스포츠지도과는 2023학년도 학생모집을 폐지하며, 그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제5조(학과 통폐합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경과조치) ① 폐과에 따른 학과의 경과조치로 학과의 모집중단 년도부터 해당 전공을 졸업할 수 있도록 존치년도를 적용하여 최종모집 중단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의 존치년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재(복)학생의 경우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거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칙 개정 전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재(복)학생의 경우 학칙 개정 전 학과의 제적생 및 규정학기초과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 제8항 및 제47조 제3항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부터 아동보육복지학과는 아동교육학과로, 국방장비학과는 국방장비부사관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학년도부터 아동교육과는 아동보육복지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학년도부터 아동교육과는 아동보육복지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 칙		제정일자		1993.03.01	
			개정일자		2026.03.01	
			개정번호	63	페이지	31/35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부터 국장장비부사관과는 국방스마트장비과로, 무인드론부사관과는 드론·UAV운용과로, 호텔조리베이커리과는 카페베이커리과로, 스타일리스트과는 패션뷰티스타일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부터 국방장비부사관학과는 국방스마트장비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 전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1-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였기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과 ○○○전문학사

년 월 일

여 주 대 학 교 총 장 ○ ○ ○ (직 인)

학위번호 : 여주대-○○○○-○○○○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였기에 학사 학위를 수여함.

○○과 ○○○학사

년 월 일

여 주 대 학 교 총 장 ○ ○ ○ (직 인)

학위번호 : 여주대-○○○○-○○○○

[별 지 2]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여 주 대 학 교 총 장 ○ ○ ○ (직 인)

[별 표 1-1]

전문학사 학위구분

학 과 명	학 위 명 칭	학 과 명	학 위 명 칭
미래자동차과	공업	치위생과	치위생
토목방재과	토목방재	물리치료과	보건
반도체시스템과	공업	안경광학과	보건
AI소프트웨어과	AI 소프트웨어산업	작업치료과	보건
해운산업과	해운산업학	건강운동재활과	건강재활
국방스마트장비과	공학	카페베이커리과	식품
항공정비과	공업	심리재활치료과	보건
드론·UAV운용과	공학	패션뷰티스타일과	패션미용예술
특전부사관과	군사	전기과	공업
사회복지상담과	사회복지	e스포츠과	e스포츠산업
준오헤어스타일과	미용예술	웹툰콘텐츠과	예술
실용음악과	음악	지방자치행정과	행정
방송영상미디어과	방송영상미디어	골프산업과	골프산업
스포츠·경호과	체육	파크골프지도과	체육

[별 표 1-2]

학사 학위구분

학 과 명	학 위 명 칭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사

[별 표 1-3]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구분

학 과 명	학 위 명 칭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사
미래자동차공학과	공학사
항공정비공학과	공학사
국방스마트장비학과	국방장비공학사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사
스포츠·경호학과	체육학사
패션뷰티스타일학과	패션미용경영예술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사
심리재활치료학과	심리재활치료학사